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상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6.

발 의 자 : 김상조, 권기만, 김수민,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일자리, 노인관계기관, 효도수당, 장수수당 지원 등 구체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 (안 제1조 ~ 제4조)
 - 시장의 노인 사회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부여
-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안 제5조 ~ 제7조)
 -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안 제8조 ~ 제13조)
 - 일자리사업 계획 및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 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안 제14조 ~ 제17조)
 -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 마. 노인관계기관 지원 (안 제18조 ~ 제22조)
 -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
- 바.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증진 (안 제23조 ~ 제31조)
 -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및 노인장수수당 지급 등
- 사. 다른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세대 이상이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 받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장 노인일자리 사업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해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경로당의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제1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 한다)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난방연료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칙 준수와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회의록 관리

5.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6.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3회 이상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시상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노인관계기관

제18조(노인관계기관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 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결산보고 등)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 실적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6장 효행장려 및 효 문화증진

- 제23조(경로의 달) 시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과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다.
- 제24조(효행교육장려) ① 시장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통예절기관 등에 위탁해 청소년인성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23조에서 정한 경로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해야 한다.

② 표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효도수당 지원 등) ① 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내용과 주민등록 등 관련공부 및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10일 이내에 확정해 신청한 달부터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27조(노인장수수당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9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지급방법 등) ① 장수수당은 직권조사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위임장 소지자를 말한다)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대상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장수수당을 지급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노인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2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이 중복되는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주소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일	비고
위와 같이 4세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읍면동 담당공무원 기재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 대장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지급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관계 :) 주 소 : 연락처 : 구미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지급대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노인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illegible]

참 고 사 항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12.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1.12.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 실	휴게 실	객실	공동 목욕 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 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중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 담 지 도 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강사(외부 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 무 원	조 리 원	관 리 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 인 교 실	1명		1명				

비 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